|  |  |  |
| --- | --- | --- |
|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7]88호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발전개혁위•상무주관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발전개혁위•상무국 :당중앙•국무원의 결정 및 배치를 관철하며 <국무원의 외국인투자 성장 촉진조치에 관한 통지>(국발[2017]39호)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외국인투자 성장을 촉진시키며 외국인투자의 품질을 증진시키고 외국인투자자의 지속적인 중국투자 확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1.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 주민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을 직접투자 형태로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과세이연 정책을 시행하며 원천징수법인세를 잠정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2.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1) 이익배당금으로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 진행하는 증자, 기업신설, 지분인수 등 지분투자 행위를 포함하되 상장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상장회사 지분인수(조건에 부합되는 전략투자는 제외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투자를 지칭한다.① 중국 경내 주민기업의 불입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자하거나 전환하는 경우;②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 주민기업을 신설하는 경우;③ 비(非)관계자로부터 중국 경내 주민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④ 재정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외국인투자자가 상기 투자행위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피투자기업으로 통칭한다.(2) 외국인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은 중국 경내 주민기업이 이미 실현한 유보이익으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정기배당금, 특별배당금 등 지분투자 수익에 속해야 한다.(3)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이익배당금이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이익배당기업의 계좌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인의 계좌로 직접적으로 송금되어야 하며, 직접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경내외 기타 계좌를 경유하여서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이익배당금이 현물•유가증권 등 비(非)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익배당기업으로부터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직접투자가 이루지기 전에 기타 기업•개인 대신 보유하거나 임시보유한 기록이 있어서는 아니된다.(4)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기간에 피투자기업이 아래 범위에 부합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지칭한다.①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수록된 권장형 외국인투자산업 목록에 속하는 경우;②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에 속하는 경우.3. 이 통지 제2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투자자는 조세징수 관리 요구에 따라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료를 이익배당기업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익배당기업은 적절한 심사를 거쳐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할 세무기관에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잠정적으로 기업소득세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법인세를 공제•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세무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후속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에 규정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이미 누린 후 세무부서의 후속검사에서 소정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이 이익배당기업에게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에 의거하여 지연납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납세지연기간은 해당 이익배당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5.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릴 수 있으나 실제로 누리지 못한 경우 관련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정책에 대한 소급적용을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6. 지급시(地級市) 이상의 세무부서는 후속관리 과정에서 피투자기업이 종사하는 경영활동이 이 통지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목록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동급 발전개혁부서•상무부서에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유관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7.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양수도, 지분환매(還買), 청산 등 방식으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린 직접투자를 실제로 회수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후 7일 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이연된 세금을 보충납부하여야 한다.8.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에 규정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린 후 피투자기업이 특수구조조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실제로 특수구조조정에 따라 세무처리가 이뤄진 경우 이 통지 제7조 규정에 따른 이연 세금 보충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9. 이 통지에서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비주민기업을 지칭한다. 이 통지에서 "중국 경내 주민기업"이러 함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된 주민기업을 지칭한다.10. 이 통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2017년 1월 1일 포함)에 취득한 정기배당금, 특별배당금 등 지분투자 수익은 이 통지를 적용받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 통지 제5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재정부세무총국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2017년 12월 21일 |  | **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7〕88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发展改革委、商务主管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商务局：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按照《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国发〔2017〕39号）有关要求，进一步积极利用外资，促进外资增长，提高外资质量，鼓励境外投资者持续扩大在华投资，现对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有关问题通知如下：　　一、对境外投资者从中国境内居民企业分配的利润，直接投资于鼓励类投资项目，凡符合规定条件的，实行递延纳税政策，暂不征收预提所得税。　　二、境外投资者暂不征收预提所得税须同时满足以下条件：　　（一）境外投资者以分得利润进行的直接投资，包括境外投资者以分得利润进行的增资、新建、股权收购等权益性投资行为，但不包括新增、转增、收购上市公司股份（符合条件的战略投资除外）。具体是指：　　1.新增或转增中国境内居民企业实收资本或者资本公积；　　2.在中国境内投资新建居民企业；　　3.从非关联方收购中国境内居民企业股权；　　4.财政部、税务总局规定的其他方式。　　境外投资者采取上述投资行为所投资的企业统称为被投资企业。　　（二）境外投资者分得的利润属于中国境内居民企业向投资者实际分配已经实现的留存收益而形成的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　　（三）境外投资者用于直接投资的利润以现金形式支付的，相关款项从利润分配企业的账户直接转入被投资企业或股权转让方账户，在直接投资前不得在境内外其他账户周转；境外投资者用于直接投资的利润以实物、有价证券等非现金形式支付的，相关资产所有权直接从利润分配企业转入被投资企业或股权转让方，在直接投资前不得由其他企业、个人代为持有或临时持有。　　（四）境外投资者直接投资鼓励类投资项目，是指被投资企业在境外投资者投资期限内从事符合以下规定范围的经营活动：　　1.属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所列的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2.属于《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　　三、境外投资者符合本通知第二条规定条件的，应按照税收管理要求进行申报并如实向利润分配企业提供其符合政策条件的资料。利润分配企业经适当审核后认为境外投资者符合本通知规定的，可暂不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十七条规定扣缴预提所得税，并向其主管税务机关履行备案手续。　　四、税务部门依法加强后续管理。境外投资者已享受本通知规定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经税务部门后续管理核实不符合规定条件的，除属于利润分配企业责任外，视为境外投资者未按照规定申报缴纳企业所得税，依法追究延迟纳税责任，税款延迟缴纳期限自相关利润支付之日起计算。　　五、境外投资者按照本通知规定可以享受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但未实际享受的，可在实际缴纳相关税款之日起三年内申请追补享受该政策，退还已缴纳的税款。　　六、地市（含）以上税务部门在后续管理中，对被投资企业所从事经营活动是否属于本通知第二条第（四）项规定目录范围存在疑问的，可提请同级发展改革部门、商务部门出具意见，有关部门应予积极配合。　　七、境外投资者通过股权转让、回购、清算等方式实际收回享受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待遇的直接投资，在实际收取相应款项后7日内，按规定程序向税务部门申报补缴递延的税款。八、境外投资者享受本通知规定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待遇后，被投资企业发生重组符合特殊性重组条件，并实际按照特殊性重组进行税务处理的，可继续享受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待遇，不按本通知第七条规定补缴递延的税款。　　九、本通知所称“境外投资者”，是指适用《企业所得税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非居民企业；本通知所称“中国境内居民企业”，是指依法在中国境内成立的居民企业。　　十、本通知自2017年1月1日起执行。境外投资者在2017年1月1日（含当日）以后取得的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可适用本通知，已缴税款按本通知第五条规定执行。财政部税务总局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2017年12月21日　　　 　　 |